

등록번호	관광산업과-12583
등록일자	2016. 10. 11.
결재일자	2016. 10. 11.
공개여부	대국민 공개

주무관	한식팀장	관광산업과장	문화관광체육 국장	부시장	시장	결 재
강주옥	김태훈	황권주	최락기	조봉업	2016. 10. 11. 김승수	
협 조 자						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.

사람의도시, 품격의전주

전주비빔밥 상표 통상사용권 추가계약 계획



문 화 관 광 체 육 국
관 광 산 업 과

전주비빔밥 상표 통상사용권 추가계약 계획

-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편의화 된 제품에 사용하는 비빔밥 상표권 추가 사용계약 요청에 따라
- 상표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전주 비빔밥의 세계화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함.

□ 요청개요

- 요청업체 : 한우물 영농조합법인 / 김제시 용지면
- 요청배경 : 냉동 가공밥을 생산하여 CJ, 청정원, 풀무원 등에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코스트코 등에는 자체상표로 납품하는 중 전주식 비빔밥 납품 협의 과정에서 전주비빔밥 상표사용을 요구 받음.
 - 대만 등 해외수출 추진과정에서도 전통 전주비빔밥을 조건으로 제시해 옴.

□ 쟁점사항

1.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주비빔밥 상표를 전주지역 이외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
 - ▶▶▶ 상표법 상 先出願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,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은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이 가능 함.(상표법 제90조2항4호, 자문 완료)
 - 단,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, 전주비빔밥 고유명사 사용 불가
 - ※ 전주비빔밥 - 상표등록 (1999년/전주시),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(2010년/비빔밥생산자연협회)
2. 전주비빔밥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
 - ▶▶▶ 전주비빔밥 레시피 사용과 전주시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, 인증을 받은 사람이 조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함으로서 해소 가능
3. 기존 상표사용중인 계약 업체 (주)전주비빔밥의 의견
 - ▶▶▶ 전주시와 통상사용권으로 계약이므로 복수의 업체와 상표사용 계약이 위법·부당하지 않으나 통상사용권에 따른 추가 확대 계약은 지양해 달라는 의견.

4.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을 소유하고 있는 비빔밥생산자 연합회 의견

- ▶ 연합회와 영업범위가 겹치지 않으므로 이익침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, 오히려 전주비빔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

□ 실무검토 의견

- (주)전주비빔밥은 나물로만 구성된 상품이며, '14년부터 해외수출이 중단된 상태임
- 현재 식품시장이 가공(볶음)밥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전주비빔밥도 가공밥으로 상품개발이 필요한 시점임
- 상표사용과 전주비빔밥 고유 맛을 유지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 전주시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고, 세수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통상사용권 추가계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□ 기대효과

- 전주비빔밥의 인지도 확산과 다양한 수출경로 확보(비빔밥세계화 기대)
-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증수 효과
 - 현재 (주)전주비빔밥 월 매출액 1억5천(연 17억) 에 따른 수수료 (0.3%) 월 500천원, 연 6,000천원
- 비빔밥 원료를 지역생산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소득 향상기대

□ 통상 사용권 계약(안)

- 계약자(사용권자) : 한우물 영농조합법인 (대표 최정운) / 김제시 용지면
- 계약기간 : 10년 (통상 10년단위로 계약)
- 로얄티(선급금): 50,000천원 (상표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 결정)
- 경상 로얄티(상표 사용료) : 현 조례상 공장도 판매가(출고가)의 1,000분의 3으로 계약(관련조례 제16조). 단, 조례개정 이후 재계약으로 사용료 징수

※ 현행 조례상 사용료가 1,000분의 3으로 징수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전주비빔밥 상표 인지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조례개정 추진.

□ 금후일정

- 통상사용권 요구자와 협상(기간, 로열티 등) 및 계약 10월
- 협약식 체결 10월

참고 1. 상표 현황

- 상표권자 : 전주시
- 상 표 명 : 전주비빔밥
- 상표개발 : 1999년
- 개 발 비 : 400백만원 (레시피 및 상표개발비)
- 사용권자 :



사용권자	계약기간	사용료부과	비고
(주)전주비빔밥 (대표 김정숙)	10년 (`14.3 ~ `24.2)	0.3% (매출액/공장도 판매가)	최초계약 `99년 사용료 1% → `11년 0.3%변경

- 최근 5년간 사용료 징수현황

(단위 : 천원)

2015년	2014년	2013년	2012년	2011년
5,923	4,692	5,245	6,542	4,853

참고2. 업체 현황

설립연도	주요생산품	공급처	연매출액	종업원수	수출
2006년	냉동가공밥 (볶음밥, 나물밥 등)	풀무원, 오뚜기, CJ 등	300억/월20억	150명	중국, 미국 등

붙임 1. 상표권 법적자문 결과 1부.

2. 한우물과 상표사용권 계약서 1부. 끝.